



# 인천광역시서구



수신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 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식약처에서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http://foodsafetykorea.go.kr)에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령을 숙지하시어 향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 1부. 끝.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지방보건의서기 최지은

식품산업팀장 우영윤

식품산업위생 전결 2022. 8. 17.

과장 김용석

협조자

시행 식품산업위생과-18329 (2022. 8. 17.) 접수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제2청사 식품산업위생 / http://seo.incheon.kr  
과 (심곡동)

전화번호 032-560-4333 팩스번호 032-560-2756 / wldms2222@korea.kr / 대국민 공개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